

평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89
----------	----

제출년월일 : 2023. 1. 4.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평창군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앞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나. 상품권의 발행 및 종류, 사용처(안 제3조 ~ 제5조)
- 다. 판매대행점 협약 및 가맹점의 등록·취소(안 제6조 ~ 제7조)
- 라. 상품권의 환전청구 및 환전(안 제9조)
- 마. 상품권의 할인, 판매 및 환전 수수료(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1” 참조
- 나. 예산조치 : 연간 100억원의 상품권 발행 및 유통에 연간 15억원의 비용발생 예상, 2023년 당초예산에 12억원의 예산 반영됨

(부족예산 3억원 2023년 1회 추경에 반영 계획).

※ “붙임2” 비용추계서 참조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2. 10. 27. ~ 2022. 11.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비규제
- 3) 부패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5) 개인정보보호 사전검토 : 개선사항 반영
 - 시행규칙 별지 제3호 및 제7호 서식 관련 내용 반영

평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평창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창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평창군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발행자 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교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선불전자지급수단, 선불카드를 말한다.
2. “종이상품권”이란 제1호에 따른 상품권의 표기사항이 종이에 인쇄된 유가증권을 말한다.
3. “전자상품권”이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 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형태의 상품권을 말한다.

4. “운영대행사”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3조(상품권의 발행 등) ① 상품권은 군수가 발행한다.

② 군수는 상품권 발행 시 위·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인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구매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카드 또는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

제4조(상품권의 종류 등) ①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군수는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상품권의 종류는 종이상품권과 전자상품권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상품권은 기재 사항을 달리 할 수 있다.

1. 권면금액: 2천원, 3천원, 5천원, 1만원, 5만원
2. 상품권의 명칭
3. 상품권의 발행권자
4. 일련번호 및 유의사항
5. 유효기간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상품권 사용처) 상품권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의 가

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6조(판매대행점 협약 등) ① 법 제6조에 따라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와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 판매량, 환전액 및 환전잔액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을 통해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내용에 대한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판매대행점은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의 장부 등을 검사하려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판매대행점 협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가맹점 등록 및 취소)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2.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3.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군이 정하는 다음 각 목의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업소

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을 취급하는 업소

라. 그 밖에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 취소사항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가맹점 표시 및 잔액의 환급) 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가맹점임을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하며, 가맹점 표시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가맹점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상품권의 권면금액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하

여야 한다.

제9조(환전청구 및 환전) ①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대행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환전청구가 있는 경우 군수가 정하는 기한 내에 환전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재사용이 불가능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며, 보관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은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분하고 폐기조서를 작성·보관해야 한다.

④ 그 밖에 환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할인 및 수수료)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품권의 할인가매액은 1인당 월 100만원 이하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인을 및 할인 구매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재난 발생·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가 위축되었을 때

2. 소상공인 지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필요한 때

③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판매 또는 환전 금액의 각 1,0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한다.

제11조(판로촉진 및 홍보지원 등)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품권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시설이나 관광지 등 입장료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돌려줄 수 있으며,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기업체 등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점수, 출산장려금, 포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3조에 따른 임금, 보수 및 계약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

제12조(유효기간 경과 상품권)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아니한 상품권 판매대금은 군으로 귀속한다.

제13조(운영대행사)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운영대행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발행·판매·유통, 상품권 관리시스템의 관리·운용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위·수탁 계약 및 상품권의 보관·판매·재발급·환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 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4조의2(지역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자가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사랑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판매·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자금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상품권운영자금의 보유·관리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제4조제3항에 따른 유통 지역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3.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이나 사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가맹점 등록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가맹점의 자격 요건, 등록 기준 등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3. 제10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가맹점으로 재등록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지역사랑상품권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의 조성·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지역사랑상품의 환급)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조권 잔액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지역 내 소비 진작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평창사랑상품권의 발행·유통에 따른 비용발생(상품권 할인 판매, 서비스 플랫폼 운영, 판매·환전 수수료, 가맹점 모집 및 대군민 홍보 등의 비용발생)
- 평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제3조(상품권의 발행 등)② 군수는 상품권 발행 시 위·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인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구매자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카드 또는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

제11조(판로촉진 및 홍보지원 등)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할인 및 수수료) ①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 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판매 또는 환전 금액의 각 1,0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한다

제13조(운영대행사)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운영대행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발행·판매·유통, 상품권 관리시스템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 평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제10조(할인 및 수수료 등) 군수는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구매·충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할인 기간과 할인대상을 정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카드형 상품권인 경우에는 할인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금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할인판매를 변경할 때에는 평창군 홈페이지 및 모바일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미리 알려야 한다.

1. 개인: 최대 10퍼센트 이내 할인, 할인판매는 월 최대 100만원 한도
2. 법인: 최대 2퍼센트 이내 할인, 할인판매는 연간 최대 1억원 한도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연간 100억원 규모의 평창사랑상품권 발행, 구매액의 10% 할인(군비 부담)
- 상품권 서비스 플랫폼 위탁 대행 운영
- 전체 발행액의 30% 지류형 상품권 발행(군비 부담)
- 지류형 상품권 환전 및 판매대행 수수료 납부(군비 부담)
- 가맹점 모집 및 대군민 온·오프라인 홍보(군비 부담)

나. 추계 결과

- 평창사랑상품권의 발행·유통을 위해 연간 군비 15억원의 비용 소요

구 분		금 액(원)	비 고(산출내역)
계		1,500,000,000	
인센티브(상품권 할인)		1,000,000,000	· 100억원(발행액) × 10%
상품권 서비스 플랫폼 운영	* 모바일상품권(카드형, QR형) 서비스 운영 및 유지보수	110,000,000	· 100억원(발행액) × 1.1%
	* 상품권 판매대행점 통합관리 서비스 지원	8,000,000	· 0.5백만원 × 16개소(판매대행점)
상품권 제작	* 지류형 상품권 제작	43,500,000	· 30억원 ÷ 1만원권 = 300,000장 · 300,000장 × 145원/장
	* 카드 및 모바일형(QR형) 상품권 제작비 별도 비용 없음		
(지류형 상품권) 환전대행수수료		15,000,000	· 30억원 × 0.5%
(지류형 상품권) 판매대행수수료		15,000,000	· 30억원 × 0.5%
홍 보	* 온라인 광고	150,000,000	
	* 오프라인 광고	158,500,00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별첨” 참조

다. 재원조달 방안 : 자체 수입(지방세)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경제과 경제과장 김남섭
연락처	(033) 330 - 2540

[별첨]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세 출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7,500,000
평창사랑상품권 발행·유통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7,500,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7,500,000
	지방세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7,50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